

국경간 서비스 무역

적용범위

-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
 - 단,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, 금융서비스, 항공운송 서비스, 정부조달·정부보조금·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
- ※ 금융 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chapter에서 논의

☞ 단,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, 비합치조치(Non-Conforming Measure) 조항에 의거하여 유보목록에 적시 가능 ("Negative 방식")

※ 유보목록 관련, 별도자료(한미FTA 서비스투자 유보 내용 설명) 참조

협정상 의무

■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

- 내국민대우(National Treatment, NT)
 -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
- 최혜국대우(Most Favored Nation Treatment, MFN)
 -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
- 시장접근(Market Access, MA) 제한 조치 도입 금지
 - 서비스 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, 사업자의 법적 형태(법인, 자연인 등)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
- 현지주재(Local Presence, LP) 의무 부과 금지
 -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

■ 서비스 협정문상의 여타 의무

- 합리적인 국내규제(Domestic Regulation)
 - 자격 요건 및 절차, 기술 표준,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 할 때 객관적·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 필요
- 자격상호인정(Recognition)
 -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의 자격·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자격 상호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규정
- 투명성 제고(Transparency)
 -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·개정 추진시 합리적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,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응토록 함.